

군포도시공사 제7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
받은 「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」
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1년 12월 10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84호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제7조의 3(지역제한)

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군포시를 주소지로 둔 자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며
지원자가 없거나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는 기간제 직원의 채용을 위하여 지역제한
을 확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성 용 현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황 기 성 (390-7615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신설>	<u>제7조의 3(지역제한)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군포시를 주소지로 둔 자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며 지원자가 없거나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는 기간제 직원의 채용을 위하여 지역제한을 확대할 수 있다.</u>	